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

[2023. 07. 17. 채택]

목차

들어가며	2
1 용어 및 방식의 정립	3
1-1 정립 배경	
1-2 학생자치회비 예·결산안 작성 방식	
2 학생회비 사용처	7
2-1 복지 사업	
2-2 문화 사업	
2-3 지원 사업	
2-4 기타 사업	
3 예·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 및 방식 정립	10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3-2 공시 절차 일원화	
4 다뤄야 할 재원의 범주	18

들어가며

학생자치에서 ‘재정 운용’은 가장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많은 사항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납부한 소속 회원에게 그 모든 방식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비를 배분 받거나 자체적으로 수금하는 기층단위 학생회의 경우 저마다 자금이 집행되는 절차나 예·결산안의 인준 방식이 분화되어 있어 학생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위에는 학생회칙이 존재하지 않아 자금 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총학생회칙 혹은 단과대 학생회칙을 준용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학우들이 신뢰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이에 제55대 총학생회 SKKUP은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총학생회 소속 단위의 재정운용 절차와 방식을 가능한 한 일원화하여 재정과 관련한 학생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호하게 쓰이던 용어를 재정립하며, 회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학생사회 활성화의 밑바탕을 만들고자 한다.

1

용어 및 방식의 정립

1-1 정립 배경

1-2 학생자치회비 예·결산안 작성 방식

1-1 정립 배경

제119조 (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
-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 제119조 학생회비)

매 학기초,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학생회(ex. 총학생회/단과대학 학생회)에 배분되는 ‘학생회비’와, 기층단위 학생회(단과대학/학과/학부/전공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학생회비’를 혼동하는 학우들이 많음.

기층단위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학생회비'의 경우, 납부 방식과 금액은 기층단위학생회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우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정립하고자 함.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회비’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함.

다만, 기층단위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학생회비의 경우 해당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자치회비’라는 용어를 도입하고자 함.

학생자치회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1만원’

기층단위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회비

학생회비

자치회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1만원’(2023학년도 기준)

기층단위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회비

따라서 추후 학생회비 예·결산안을 작성할 시 ‘학생회비’와 ‘자치회비’를 함께 기재하되 칸을 분리해 작성하여야 하며, 용어의 혼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학생자치회비 예·결산안’으로 명명하고자 함.

1-2 학생자치회비 예·결산안 작성 방식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에 의거하여 해당 양식에 맞춰 ‘학생자치회비’ 예·결산안을 작성함. 예·결산안 작성 시에는 ‘학생회비’와 ‘자치회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배분받은 ‘학생회비’가 없거나, 직접 납부받은 ‘자치회비’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수입			지출		
연번	항목	금액	연번	항목	금액
1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	1	23학년도 1학기 간식 배부 사업	-
2	전기 자치회비 이월금	-			-
3	당기 학생회비	-	2	열람실 개설 및 보수	-
4	당기 자치회비	-	3	학부생 체육대회 실무 비용	-
5	예금 결산 이자	-			-
수입 총계			지출 총계		

(학생회비 예·결산안 작성 예시)

‘학생회비’와 ‘자치회비’는 학우들이 직접 납부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음. 이를 용어로서 분리함은 학우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사용처를 분리하기 위함이 아님.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정운용세칙 중 현행 총학생회칙 및 해당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학생회비 사용처

- 2-1 복지 사업
- 2-2 문화 사업
- 2-3 지원 사업
- 2-4 기타 사업

학생회비는 학우들에게 보편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범주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함.

2-1 복지 사업

학우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업. 단위 내 특정 집단을 위해서가 아닌 해당 단위에 소속된 대부분의 학우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학우들의 전반적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물품 대여 사업, 간식 배부 사업, 시설 개보수 및 환경 개선 사업(모든 학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의미) 등

2-2 문화 사업

단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사업. 단위 내 모든 학우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최대한 많은 학우들에게 해당 행사 참여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함. 문화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 중 행사를 위한 시설이나 안전 관리와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적용될 만한 사용처도 이에 해당함.

예) 공대인의 밤, 홈커밍데이, 체육대회 등

2-3 지원 사업

단위 산하의 학생회(단과대의 경우 학과/학부/전공 학생회)에 대한 학생회비 배분, 혹은 공식 절차를 거쳐 인준 받은 학생단체(소모임, 학회 등)를 지원하는 사업. 이를 통해 학생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에 해당함.

예) 단과대학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과 학생회에 학생회비 배분, 단과대 소속 소모임에 지원금 지급

2-4 기타 사업

학생회가 해당 단위 소속 학우들의 대표성을 띄는 단체로서 진행하는 사업. 진행 상황 또는 결과가 일반 학우들에게 공개되어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예) 스승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수입			지출		
연번	항목	금액	연번	항목	금액
1	제55대 중선관위 이월금	₩724,884	1	축제 실무 비용	₩8,071,300
2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7,435,642	2	대여 사업 물품 확대 및 추가 비치	₩982,650
3	당기 학생회비	₩14,075,600	3	차기 이월금	₩10,182,463
4	예금 결산 이자	₩287	4	예비비	₩3,000,000
수입 총계		₩22,236,413	지출 총계		₩22,236,413

(2023-1학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학생회비 사용처 예시)

수입			지출		
연번	항목	금액	연번	항목	금액
1	제55대 중선관위 이월 금	₩1,477,304	1	축제 실무비용	₩3,302,000
			2	에스카라 로드 조성	₩6,020,800
2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124	3	에스카라 라운지 환경 개선	₩3,090,880
3	당기 학생회비	₩11,704,000			
4	예금결산 이자	₩226			
수입 총계		₩13,181,654	지출 총계		₩12,413,680

(2023-1학기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학생회비 사용처 예시)

3

예 · 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 및 방식 정립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3-2 공시 절차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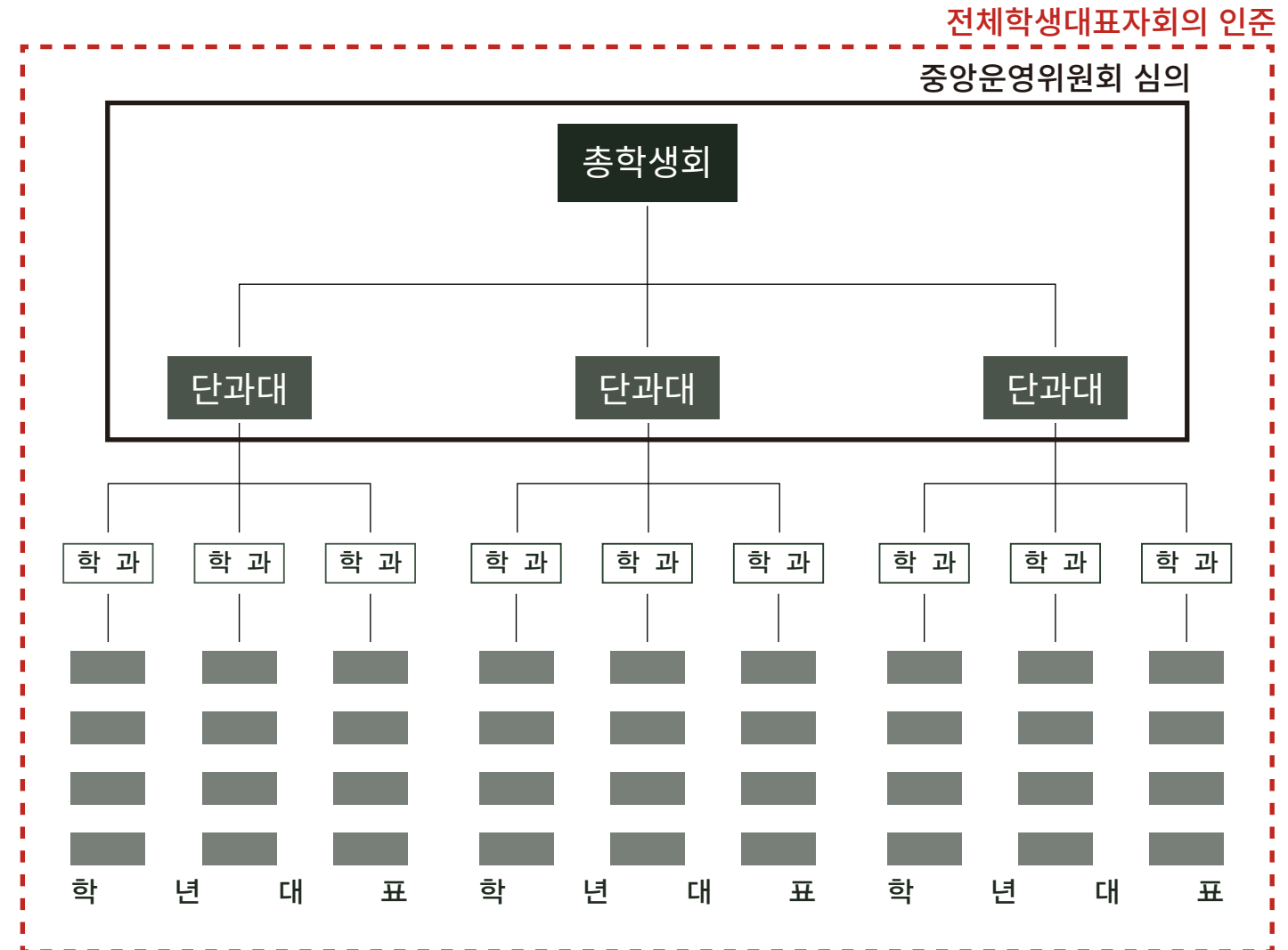
예·결산안을 작성한 이후 거쳐야 할 세 단계가 있음. (1. 심의, 2. 인준, 3. 공시)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회의 예·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가 서로 대동소이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회칙이 존재하지 않아 예·결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단위가 존재함. 따라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모든 학생회 단위의 예·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를 최대한 일원화하여** 학우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집행위원들도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그러나 대부분의 기층단위 학생회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고, 예산 사용처 혹은 사용하는 재원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에 따르는 실효성이 적음. 또한 결산은 단위별로 회칙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결산안의 심의/인준/공시는 각 단위의 기존 회칙을 우선하여 진행하되**, 관련 회칙이 부재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방식이 더욱 실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식을 따를 것을 권고함.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현행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



평 회 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음.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단과대학 학생회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안)]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단과대학 또한 단위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안 심의를 받고,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경학대회, 문학대회, 사학대회 등)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칙으로 함.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단과대학 학생회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안)]

제54조 (예산)

1. 예산은 경제대학 집행국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단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여 경학대회에서 의결한다.
2. 확정된 예산안은 경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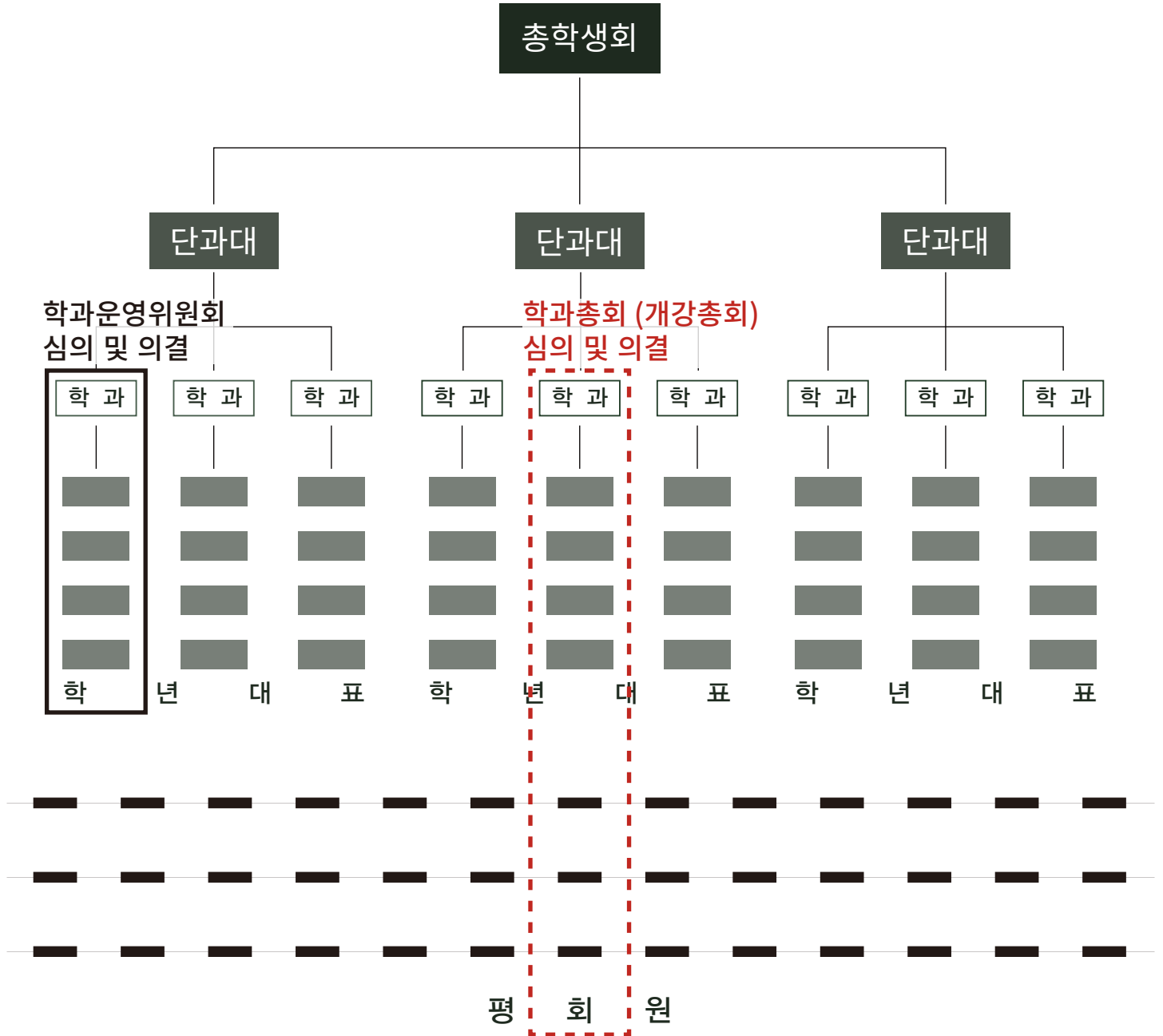
1. 매 학기마다 경제대학 집행국에서는 결산을 하여 단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경학대회에서 의결한다.
2. 최종 결산안은 경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한다.
3. 경제대학 집행국은 2학기 경학대회 이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한다.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학생회칙(22. 04. 27 개정))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해당 방식으로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학과/학부/전공 학생회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안)]



총학생회칙 제106조를 확인해보면, ‘학과/학부/전공 학생회는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학과/학부/전공 학생회는 원칙적으로 학과/학부/전공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학생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단위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학과총회(개강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총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예·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만 하는 것을 허용함.

3-1 심의/인준 절차 일원화

[학과/학부/전공 학생회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안)]

제5장 재정

제3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과지원금, 사회과학대학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4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과 2학기과 나누어 집행한다.

제35조(집행 및 관리)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 ②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6조(예산)

- ① 예산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재정담당부서가 항목별로 편성하여 학생총회에서 심의 및 조정한 후 의결한다.
- ② 총회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

- ① 결산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재정담당부서가 작성하여 학생총회에서 심의 후 의결한다.
- ② 총회 의장은 확정된 결산안을 3일 이내에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칙(22. 04. 27 개정))

회칙이 존재하는 여러 학과/학부/전공 학생회에서 해당 방식으로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2 공시 절차 일원화

결산안 공시는 필수로 하며, 과방, 게시판, SNS 소통창구 등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시 및 공지할 것을 권고함.

최종 결산안은 임기 말에 공고함.

4

다뤄야 할 재원의 범주

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원은 크게 학생자치회비, 후원금, 교비 등으로 분류됨.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인 학생자치회비만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후원금의 경우 학생회의 노력으로 얻은 자원인 점을 감안하여, 예·결산안의 심의/인준 절차를 밟지는 않되, 결산 보고와 공시의 절차만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생자치회비	후원금	교비 등
1 심의		
2 인준	1 보고	해당없음
3 공시	2 공시	

(자원별 심의/인준/공시 절차 기준 확립)